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 방송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
○ 대상장비 : 행정전화시스템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(주)영원정보통신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2027년 방송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"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**제조사(또는 공급사)**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② "**제조사(또는 공급사)**"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"군포시"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"**제조사(또는 공급사)**"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최대 협약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"군포시"와 "**제조사(또는 공급사)**"가 협의하는 금액(₩36,372,000원:부가가치세 포함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"**제조사(또는 공급사)**"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 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"**제조사(또는 공급사)**"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월 일

"발주자" 군 포 시 청 (인)

"제조사(또는 공급사)" (주)영원정보통신 (인)

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 방송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
○ 대상장비 : 전관방송설비, 대회의실방송장비, 이동방송차량설비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㈜유엔콘트롤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2027년 방송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"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**제조사(또는 공급사)**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② "**제조사(또는 공급사)**"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"군포시"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"**제조사(또는 공급사)**"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최대 협약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"군포시"와 "**제조사(또는 공급사)**"가 협의하는 금액(₩14,150,000원:부가가치세 포함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"**제조사(또는 공급사)**"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 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"**제조사(또는 공급사)**"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월 일

"발주자" 군 포 시 청 (인)

"제조사(또는 공급사)" ㈜유엔콘트롤 (인)

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 방송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
○ 대상장비 : HD 영상 송출시스템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㈜티노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2027년 방송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"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**제조사(또는 공급사)**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"**제조사(또는 공급사)**"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"군포시"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"**제조사(또는 공급사)**"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최대 협약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"군포시"와 "**제조사(또는 공급사)**"가 협의하는 금액(₩17,836,000원:부가가치세 포함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"**제조사(또는 공급사)**"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 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"**제조사(또는 공급사)**"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월 일

"발주자" 군 포 시 청 (인)

"제조사(또는 공급사)" ㈜티노 (인)

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

○ 사 업 명 : 2027년 방송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
○ 대상장비 : AIRTMS V2.0 (센서 포함)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 : ㈜그램웍스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2027년 방송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"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**제조사(또는 공급사)**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② "**제조사(또는 공급사)**"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"군포시"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"**제조사(또는 공급사)**"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최대 협약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"군포시"와 "**제조사(또는 공급사)**"가 협의하는 금액(₩8,738,000원:부가가치세 포함)으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"**제조사(또는 공급사)**"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 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"**제조사(또는 공급사)**"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월 15일

"발주자" 군 포 시 청 (인)

"제조사(또는 공급사)" ㈜그램웍스 (인)